2026년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1. 목적

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 수급자)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입소정원 및 모집 방법

1) 입소정원 : 65명 (남.여)으로 한다.

2) 모집 방법

시설 입소자 모집의 경우 특별히 규정과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.

① 자체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.

② 온라인 : 장기요양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을 홍보한다.

③ 오프라인 : 유관기관 연계협력 등의 홍보를 통하여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.

④ 기타 : 이용자(보호자), 직원 등의 소개, 전화상담, 방문상담 등을 실시한다.

3. 입소대상자

① 장기요양서비스 중 시설급여(1~5등급) 판정을 받은 자

②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

4. 입소 시 구비서류

① 장기요양 인정서류 (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) 단, 등급외자 제외

② 입소건강검진 결과서 1부

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만 해당)

④ 신분증 사본 1부

5. 입소 절차

① 초기면접 : 사회복지사와 간호(조무)사등은 초기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.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 기능 정도를 평가하여 입소 여부를 판정한다.

② 입소 계약 :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.

③ 입소 및 생활 안내 :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·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.

6.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

① 입소 노인은 시설지권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.
② 입소 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③ 입소 노인의 외출, 외박은 담당 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.
④ 입소 노인은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.
⑤ 입소 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,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
⑥ 입소 노인의 외출,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호자(인솔자)의 책임으로 한다.

7. 입소자의 책임

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.
①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② 급여제공계약서(표준약관)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 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.
③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④ 분실, 파손,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,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.
⑤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.
⑥ 혐오 물품, 기타 급여 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주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.

8.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

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(수급자)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.

1) 서비스제공자의 의무

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
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
2) 수급자의 의무

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
③ 기관 내의 개인 청결 의무
④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3) 수급자의 권리

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
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
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
④ 신체적 구속받지 않을 권리
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
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
⑦ 정치, 문화,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
⑧ 불편 사항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
⑨ 기관 내·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
⑩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

9.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

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 목적·기간·해제,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, 월 이용료, 기타 비용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.

1) 계약 목적

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 수급자)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) 계약기간

① 계약 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.

② 1항의 기간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.

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(또는 보호자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(또는 보호자)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.

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.(단, 시설 정원이나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
3) 계약해제

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.

① 입소자(또는 보호자)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,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.

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.

④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
⑤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
⑥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⑦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.

4)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(1) 신원인수인의 권리

①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
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
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.

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가 있다.

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.

⑥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(2) 신원인수인의 의무

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.

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, 식재료비, 기타 비용 등 입소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③ 입소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및 인적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해야 한다.

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하여야 한다.
(해외 이주,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)

⑤ 입소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

⑥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을 시설에 통보한다.

⑦ 기타 시설 생활 규칙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0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1) 월 이용료

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】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규칙 제14조】의 비급여 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 비용은 시설 대표자가 정한다.

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
③ 이용료는【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】에 따라 산정한다.

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2)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(1) 본인부담금

① 1등급 ~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%를 부담한다.

② 1등급 ~ 5등급의 의료급여자 및 감경 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8% 또는 12%를 부담한다.

③ 1등급 ~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.

④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은 요양시설 및 치매전담실 가형기준 2.1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한다.

(2) 비급여 및 기타 비용

① 식재료비(1식 3,000원,간식 오전,오후제공 1,000원)

② 상급침실 이용료(특별침실, 2인실)

(원 , 30일 기준)

등급	법정본인부담금 30일			식대 (간식포함)	합 계 (법정본인부담금+식대) 30일		
	일반 20%	감경 12%	감경 8%	30일	일반 20%	감경 12%	감경 8%
1	558,420	335,052	223,368	300,000	858,420	635,052	523,368
2	503,460	310,824	207,216		818,040	610,824	507,216
3.4.5	489,240	293,544	195,696		789,240	593,544	495,696

③ 기타 비용(의료비, 약제비, 개인 전용 물품 구입 등)

■계약의사 진료시 본인부담금 (기준)

일반(20%):초진3,760원 재진2,680원 감경(12%):초진2,260원 재진1,600원

감경(8%):초진 1,500원 재진 1,060원

<별첨> 2026년 노인요양시설 급여비용 상세내역

비급여 비용		
항목	금액(30일 기준)	산출 근거
식사재료비	270,000원	끼당 3,000원(아침/점심/저녁 제공)
간식비	30,000원	끼당 500원(오전/오후 제공)
상급침실 이용료 (특별침실 및 2인실)	60,000원	1일당 2,000원
계약의사 진찰비용	실비	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에 따름
방문가정 간호	실비	가정간호 병원 책정에 따름
진료비 및 약제비 (입.통원 포함)	실비	병원 및 약국 책정에 따름
이.미용비	무료	단, 전문미용사 이용할 경우 전액 자부담
기타	실비	개인 전용 간식,물품 구입 등 전액 자부담
입소 시 구비서류	1)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) 개인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) 입소자 건강진단서 1부 (전염병 감염여부 확인 용도 ex 결핵, B형간염,피부병 등) 4) 입소자 및 주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 5)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(병원에서 오실 경우) 6) 연계기록지 (타 요양기관에서 오실 경우) 7) 현재 질환 관련 처방전 및 처방약 (정기 처방약은 2주분 이상) 8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해당자에 한함) 9) 복지용구 대여 중일 경우 해지 요청 (해당자에 한함)	
입소 시 준비사항	1) 의류 : 실내복(겉옷 포함, 4~5벌) / 속옷(내의 포함, 4~5벌) / 양말(5켤레) ★ 모든 의복에 이름표를 새겨서 보내주세요 ★ 2) 신발 : EVA실내화 1켤레, 실외화 1켤레 3) 개인용품 : 각티슈, 전기면도기, 틀니(틀니통), 보청기, 안경, 돋보기, 등 ★ 위생용품(칫솔, 치약, 휴지, 물통, 기저귀 등)은 기관에서 제공해 드립니다. 4) 개인식품 : 기호식품(커피, 건강식품 등) 5) 기타 개인 소장품은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♥	
기타	이용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 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♥ - 찾아오시는 길 :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밭로4길 43(대곡파출소 맞은편) - 수목원실버타운 대표번호 : 053-642-7799	